

# 국일제지,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 차질

## 수원지법,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에 인용결정 ... 이사 6명으로 줄어

법원이 국일제지의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11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제기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선임한 이사 6명(총 12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신호제지의 이사는 국일제지측 3명과 신호제지측 3명 등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일제지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하지만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6명은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의 청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김종곤 대표가 이사로 승인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신호제지가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부존재 주주총회로 보고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사 6명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그러나 김종곤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김종곤 대표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호제지 이사를 선임한 인물”이라면서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종곤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김종곤 대표이사를 해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일제지는 2005년 12월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한 이사 6명과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등 7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6명의 이사를 선임한 후 법원에 먼저 등기하는 바람에 국일제지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법원 등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호제지도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주주총회가 진행됐으며 국일제지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6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제지기업 2위인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2005년 8월 경영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69%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국일제지가 임시주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이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한 이사 6명을 국일제지보다 먼저 수원지법에 등기하면서 신호제지 경영권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3>